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98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재난지원금의 지원 근거 및 방식을 규정함(안 제6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‘교육감’이라 한다)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 재원·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.
3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5. “교육재난”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, 대면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.
6. “교육재난지원금”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대상)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제1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
2.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제3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·휴교한 학교의 학생
3.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
4.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
5.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를 본 학교 밖 청소년

제6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(補填)에 필요한 현금,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